

#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9. P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,149,351천원으로서  
이중 6건에 149,018천원을 지출하였으며, 지출내역은

-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 50,242천원
- 산불유급감시원 추가배치 인건비부족분 38,046천원
-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부족분 24,744천원
- 군의회청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0,000천원
- 급성심도열병 급속확산 긴급방제비 18,707천원
-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7,279천원임.

나. 19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은 50,127천원으로서  
이중 영동고속도로4차선확포장 장평IC공사에 따른 상수도관로 조기  
이설 요구에 따른 설계비 15,000천원을 지출하였음.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0조
-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2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 제34조(예비비)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(예비비사용의 제한)

- 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·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##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조사

(단위 : 천원)

구			분	지출 결정액	지출원 인행위 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과		목	사 업 명						지출결 정일자	지 출 일 자	
세 항	세세항	목									
계			6 건	149,018	149,018	149,018					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50,242	50,242	50,242	0	0	3.15	3.19	명예퇴직수당부족
산림관리	시도비보조	201-10	산불유급감시원인 건비	38,046	38,046	38,046	0	0	3.31	4.14	산불감시인원부족 추가배치
청소관리	경상적경비	306-05	환경미화원퇴직금	24,744	24,744	24,744	0	0	4.12	4.14	환경미화원퇴직금 부족
재산관리	자체사업	208	의회청사정밀구조 안전진단	10,000	10,000	10,000	0	0	6.2	7.7	의회청사증축공사 중심각한균열발견
농산관리	국고보조	402-02	공동방제사업	18,707	18,707	18,707	0	0	7.22	10.30	급성인도열병 급 속확산 긴급방제
선거관리	자체사업	403-02	동시지방선거부담 금	7,279	7,279	7,279	0	0	11.12	11.21	동시지방선거부담 금조기납부요구

# 19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조서

(단위 : 천원)

구			분	지출 결정액	지출원 인행위 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과		목	사 업 명						지출결 정일자	지 출 일 자	
세 항	세세항	목									
계			1 건	15,000	15,000	15,000	0	0			
상하수관 리	자체사업	401-02	상수도관이설공사	15,000	15,000	15,000	0	0	8.25	11.25	영동고속도로 장 평IC공사에 따른 조기 관로이설
			이 하 여 백								